

保險料率制度와 自由化에 대한 考察

본 자료는 日本 生命保險經營學會에서 발간한 「生命保險經營」 1990년 11월호(58권 6호)에 수록된 '保險料率制度について'를 전문번역한 것임

I. 序論

1990년 4월 일본 損保各社は 종래 일률적이었던 傷害保險과 火災保險에 保險料率 割引制度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損保業界는 保險料의 自律化를 향해 진일보했으며 生保業界도 이런 사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損保料率制度和 그 自律化에 대해 고찰하고 또한 같은 관점에서 生保料率制度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損害保險産業에 있어서 競爭制度和 獨占禁止法

損害保險 料率算出에 있어서 過當競爭의 방지, 기술적 문제 혹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保險者間의 共同行爲가 필요하게 되고, 또 실제로 각국의 損保社는 料率協定등의 共同行爲를 행해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獨占禁止政策에 反하는 것이며 각국은 이러한 共同行爲와 獨占禁止政策間의 조정을 여하한 방법으로 행해왔다. 이하에서는 각국 獨占禁止法の 損害保險産業에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日本

일본에서는 1947년에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이하, 獨禁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한편에서 損保料率算出에 共同行爲의 필요성도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조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의 適用除外등에 관한 法律」(이하, 獨禁法 適用除外法),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이하, 料率團體法)의 제정 및 「保險業法」의 개정이 행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獨禁法 適用除外法은 保險者團體에 의한 料率의 算出 및 協定에 대해서 그것이 料率團體法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행해지는 행위이면 獨禁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獨禁法 適用除外法 제 1조 3호). 또한 保險業法은 損害保險種目を 두가지로 나누어 海上·航空·自動車 損害賠償責任 및 地震保險은 전면적으로 獨禁法 適用對象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일정한 共同行爲에 대해서는 獨禁法の 適用除外로 하고 있다(保險業法 제 12조의 3). 다만 保險業法 제 12조 3항에서 인정되는 共同行爲에 대해서도 保險行政의 견지에서 大藏大臣은 취소,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또한 公正去來保障의 견지에서 公正去來委員會도 이것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美 國

미국에서 聯邦獨禁法은 통상 聯邦 反트러스트法이라 불리며 「셔만法: Sherman Antitrust Act」, 「클레이튼法: Clayton Act」, 「聯邦去來委員會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풍부한 운용경험과 엄격한 規制內容에 의해 세계의 反獨占法制의 규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反獨占法制下에서도 保險産業은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그 根據法이 되는 것이 「McCarran Ferguson法: 1945년」이다. 이것은 保險産業을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행위가 保險産業을 구성하는 것이고, 州法에 의해 規制를 받고 있는 것이며, 보이콧, 강제, 위협이 아니라 조건하에서 保險監督에 대한 州의 聯邦에 대한 우선성을 인식하고, 保險業이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海上保險은 1920년에 이미 「海運法: Merchant Marine Act」에 따라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西 獨

서독에서는 獨禁法으로서 1957년에 제정한 「競爭制限禁止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이 존재한다. 同法과 保險業의 관계를 보면, 同法 제 102조는 협정이나 권고가 保險監督法에 기초하여 聯邦保險監督廳의 인가, 감시에 따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聯邦保險監督廳 및 聯邦카르텔廳에 신고를 한 것이면 保

險産業이 同法の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102조 4항에 기초하여 聯邦카르텔廳에 의한 濫用規制가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同廳은 신고받은 협정 등을 검토하고 獨禁法の 적용제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지위의 남용에 연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英 國

영국의 獨占禁止法規는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獨禁法體系도 복수의 法律로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3년 公正去來法: Fair Trading Act」, 「1976년, 1977년 制限의 去來慣行法: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6년 再販賣價格法: Resale Prices Act」 및 「1980년 競爭法: Competition Act」이다.

영국의 獨禁法은 弊害規制主義의 입장에 서서, 弊害가 생길 경우만 競爭制限의 行爲를 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保險業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1980년 競爭法」은 競爭慣行에 反하는 行爲의 規制를 규정한 것인데 同法은 제 2조 1항에서 영국 내에서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競爭制限行爲도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同條 제 2항은 「1976년 制限의 去來慣行法」에 기초하여 등록된 협정등은 競爭慣行에 反하는 行爲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우기 그 등록의무도 「1976년 制限의 去來慣行令附則」 제 8조에 의해 保險者가 保險事業을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면제되게 된다.

이상 각국의 損害保險事業에 관련되는 競爭制限行爲 및 共同行爲에 대한 獨禁法の 적용을 여하한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회피시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Ⅲ. 損害保險 料率規制制度의 國際比較

다음, 각국의 損害料率算出에 관계되는 監督, 規制 및 競爭政策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日本

가. 現行料率制度

1) 損害保險 料率制度上的 구분

현재의 損害保險料率은 制度上, 算定會料率과 業法認可料率로 나뉘어진다. 前者는 料率團體法에 기초하여 損害保險料率算定會 및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가 산출하고, 각 算定會가 회원을 대표하여 大藏大臣의 인가를 얻어 회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料率이 된다. 또한 후자는 「保險業法」 또는 「外國保險者에 관한 法律」에 기초하여 各保險會社가 산출하고, 大藏大臣의 인가를 얻어 사용하는 料率이라 정의된다.

2) 損害保險料率의 종류

保險料率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一定料率 ... 부보목적별로 保險料率이 결정되는 것
- ② 範圍料率 ... 부보목적별로 最低 및 最高의 保險料率을 정하고 계약할 때마다 위험상태에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
- ③ 標準料率 ... 일정한 표준이 되는 保險料率을 정하고, 계약마다 부보목적별 종류, 성질,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그 수정폭에 한도가 없는 것.

- ④ 自由料率 ... 구체적인 基本料率이 없이 부보 목적의 종류, 성질, 海外再保險市場의 동향, 기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

算定會料率에는 一定料率 및 範圍料率이 사용되며 業法認可料率에는 一定料率, 範圍料率, 標準料率 및 自由料率이 사용된다.

나. 損害保險 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

1) 料率團體法 제정의 연혁

明治時代 이래 損害保險 各社는 과도한 料率競爭을 계속해 왔으나 1942년 5월에 保險業法 제 11조에 기초한 強制料率制가 확립되어 과도한 料率競爭은 종식되었다. 이 규정은 카르텔에 의한 자치 통제에 의해 감독을 강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강제 카르텔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강제 카르텔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料率決定에 관해 競爭原理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1947년 4월 獨占禁止法の 制定에 의해 保險業法 제 11조에 기초하여 強制料率制가 위법이라고 판단되었고 保險業法の 개정과 함께 「損害保險 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어 保險會社의 事業者團體인 損害保險料率算定會 및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에 의한 料率算出이 인정되었다.

2) 料率團體法의 내용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料率團體法이 제정되었는데 이하에서 이것의 주요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① 料率算出團體

料率算出團體는 2개사 이상의 損保社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料率團體法 제 3조 1항), 또 이 團體에의 加入·脫退는 자유롭다(料率團體法 제 7조). 따라서 同一保險 種目에 복수의

料率算出團體가 존재하는 것 혹은 어떠한 料率算出團體의 회원사도 되지 않는 outsider의 존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로는 동일 종목에 대해 하나의 料率團體밖에 설립되지 않고 outsider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② 算定會 料率의 認可

料率算出團體에 의해 산출된 保險料率は 料率團體가 회원을 대표하여 大藏大臣의 인가를 받는데 (料率團體法 제 10조), 이것에 의해 회원에 대해서도 그 保險料率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에 대해 保險業法에 기초하는 인가,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料率團體法 제 10조의 4 제 2항).

또 인가의 요건으로서 그 料率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며,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料率團體法 제 9조) 이것은 保險料率が 收支相等의 原則 및 保險料 公平의 原則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算定會 料率의 拘束性 및 彈性性

i) 算定會 料率의 拘束性

회원사는 料率算出團體가 인가를 받은 料率에 대해서는 그 준수 의무를 갖는다 (料率團體法 제 10조의 7). 監督機關에 의한 검사나 협회 감사실에 의한 조사가 이 요율준수의 감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ii) 算定會 料率의 彈性性

이같이 料率團體가 산출한 料率에는 구속력이 있어 회원사는 그 요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결과 料率의 固定化, 회원사 경영활력의 저하 등 폐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탄력적 조치가 설정되어 있다.

○ 特別料率 (제 10조 8 - 10)

회원사가 인수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優良危險만을 선택한다든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등의 그 회사 고유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算定會 料率보다도 높은 혹은 낮은 料率이 적당한 경우, 大藏大臣의 인가를 얻어 일정비율의 料率引上 또는 引下를 실시할 수 있다.

○ 範圍料率 (제 2조 8항)

基準料率에 비해 상하 10%의 범위내에서 회원사의 판단에 의해 適用料率을 결정하는 制度이다. 1990년 4월에 처음 실시한 損保料率의 割引制度는 이것을 이용한 것이다.

2 美 國

가. 料率規制制度의 종류

미국의 損害保險料率制度는 各州마다 다른데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州定料率制 (state-made rate system)

州當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목에 대해 정한 料率을 該當州에서 영업하는 모든 保險會社가 준수하는 制度이다.

② 料率算定機關 料率制 (mandatory bureau rate system)

該當州에서 영업하는 전체의 保險會社는 料率算出團體에의 가맹이 요구되고 該當料率算出團體가 料率의 인가를 받는 制度이다.

③ 事前認可制 (prior approval system)

保險會社가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算出團體를 통하여 料率 내지는 기초자료를 州保險廳長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州의 保險監督當局은 이것을 충분히 심사한 후에 승인하고 保險會社는 인가를 받은 후 그 料率을 사용할 수 있는 制度이다.

④ 申告後使用制 (file and use system)

監督機關에 料率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기간내에 당국의 認可不許 통지가 없으면 料率은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구나 料率은 신고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⑤ 使用後 申告制 (use and file system)

申告後 使用制와 어느 정도 같은데 料率은 신고 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⑥ 申告不要制 (no file system)

料率은 그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행정당국이 保險會社를 검사할 때 料率이 保險監督法에 적합하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制度이다.

보통 ① - ③까지를 規制料率制度라 하고 ④-⑥까지를 競争料率制度라 한다.

나. 料率規制에 관한 史的 沿革

1) 初期 料率規制制度

料率規制에 있어서는 19세기 전반부터 保險會社 자체에 의한 規制가 다소 존재했지만 당시 料率의 결정권이 대리점측에 있었던 것이나, 1890년의 사만법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州에서 料率協定을 금 지하는 協定禁止法(anti-compact law)이 제정된 것등이 원인이 되어 料率規制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料率水準이 지나치게 인하되었다.

그후 1910년에는 뉴욕州에서 메리트 위원회에 의해 損害保險事業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고 다음과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 料率算出團體를 인정한다.
- 料率算出團體에의 加盟 및 料率의 준수는 임의로 한다.
- 適正料率의 유지를 위해 保險廳長에 의한 料率算出團體의 정기적 檢사를 행한다.

이 권고에 따라 州保險法の 개정이 뉴욕州를 시초로 대부분의 州에서 행해졌는데 이 개정에 의해 料率競争에 따른 料率引下보다도 保險會社의 재무적 건실성에 역점을 둔 保險監督이 취해져 料率算出團體의 영향력은 증대해 갔다.

2)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適用問題와 事前認可制度의 확립

聯邦 反트러스트法을 保險産業에 적용하는 문제의 큰 쟁점은 保險産業 監督權에 대해 州의 聯邦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점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Paul vs Virginia事件(1869년)인데, 여기서 保險事業은 「州間의 事業」이 아니기 때문에 聯邦規制 대상에서 제외되며 州에 그 監督權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 판결을 수정한 것이 SEUA사건(1944년)이고 聯邦最高裁判所는 「保險去來에서는 판매계약만이 의미있는 것이 아니고 保險契約의 교섭, 체결, 이행에 있어서 保險料의 징수 및 투자, 保險金의 지급등 성질상 다수의 州間 去來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産業은 州間의 事業이며 당연히 聯邦法の 規制對象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保險業에의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전면적인 적용 가능성이 나왔는데 만약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料率算出團體는 당연히 違法團體가 되는 등 업계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각사는 聯邦議會등에 작용하여 McCarran Ferguson 법을 제정하고 이것에 따라 保險産業을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술한 대로 이 McCarran Ferguson법은 保險産業을 聯邦 反트러스트法の 적용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保險産業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서 州의 聯邦에 대한 우

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McCarran Ferguson법의 제정을 받아 이 취지에 따른 各州 保險法の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NAIC는 통일모델요율법안(All Industry Rating Bills)을 작성하고 대부분의 州가 이것을 모방했다. 同法案에서는 保險産業은 聯邦 反트러스트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州에 따른 料率規制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事前認可制의 채택이 명문화되어 있어 여기에 事前認可制를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料率規制制度가 확립되게 되었다. 또 同法案은 反獨占政策도 고려하여 特別料率制度등의 競争促進要因도 취급하고 있다.

3) 競争料率制度로 이행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 대부분의 州가 事前認可制를 주로 하는 엄격한 料率規制를 행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競争料率制度로 이행하는 州가 증가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의 직접적인 요인은 1968년의 NAIC, 1969년의 스투어트의 보고서 등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다. 즉 직급회사등 料率團體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급속한 성장, 料率團體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火災保險 비중의 감소, 特別料率(deviation)의 활발한 이용, 혹은 料率의 경직성에 의한 引受可能性(availability)의 감소등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또 이러한 競争料率制度 아래에서 料率水準은 어느 정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상의 개입은 사후적인 것에 그친다. 그러므로 支給能力 확보의 관점에서 競争을 적정한 범위에 한정하고 保險會社 經營의 健全성을 지키기 위해 料率 이외의 經營分析 諸指標을 이용한 保險監督을 행하도록

하였다. 즉 NAIC의 「조기경보 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보험감독 정보시스템: 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등이 그것이며 이 지표에서 엄중한 감독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발견하고 중점지도를 행한다는 감독이 취해지고 있었다.

다. 料率規制制度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

1) 料率制度에 있어서 規制, 保護緩和의 동향

① McCarran Ferguson법 수정, 폐지의 동향

1987년 이후 McCarran Ferguson법을 수정,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여 聯邦議會 상하양원에서 同法の 수정법안이 제출되었다. 下院에서는 Brooks의원이 중심이 되어 수정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McCarran Ferguson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남겨두고 料率의 固定化나 지리적 지배구역 설정등의 행위에 聯邦 反트러스트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上院에서도 Metzenbaum의원 등이 McCarran Ferguson법의 폐지를 주장했는데 처음에는 전면적인 폐지안을 제출했으나, 추후에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safe harbor"라 불리는 손해데이터의 수집이나 손해발생방지를 위한 共同行爲 등은 聯邦反트러스트法の 적용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1988년 10월에 폐회한 제 100회 聯邦議會에서는 法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Metzenbaum의원등은 McCarran Ferguson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提案 103

캘리포니아州에서는 1988년 自動車保險을 쟁점으로 하는 다섯개의 提案(Proposition)이 형성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提案 103이 같은해 11월 9일

(表 Ⅲ-1)

美國 各州 損保料率制度의 변천 (1968년 - 1974년)

州	州定料率制	算定機關 料率制	事前認可制	申告後使用制	申告不要制
콜로라도			(F.C) →	F.C 1972년	
코네티컷			(F.C) →	F.C 1969년	
아이다호			(F) →		F 1969년
일리노이			(F.C) →	F.C 1969년	
메사츄세츠			F.C ←	(F.C) 1974년	
마사건			(F.C) →	F.C 1970년	
미네소타			(F.C) →	F.C 1969년	
미주리			(F) →	F 1972년	
몬타나			(F.C) →	F.C 1969년	
네바다			(F.C) →	F.C 1973년	
뉴욕			A ←	(A) 1974년	
			(F.C) →	F.C 1970년	
오레곤			(F.C) →	F.C 1969년	
유타			(F.C) →	F.C 1973년	
버지니아			(A.C) →	A.C 1973년	
위스콘신			(F.C) →	F.C 1969년	

주) F는 火災保險, A는 自動車保險, C는 災害保險

(出處: 「保險料率의 算定과 規制에 관한 諸問題」 越知 隆)

의 주민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이 提案은 랄프 네이더가 통솔하는 消費者團體인 「有權者의 叛亂」(Voters' Revolt)에 의해 제출된 것이었는데 保險料의 폭등, 즉 affordability 문제가 뒷배경이다. 提案 10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勤災保險, 海上保險, 再保險을 제외한 損害保險料率을 87년 11월의 수준에서 20% 인하한다.
- 料率을 인상할 때는 事前認可를 필요로 하고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인상할 때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 自動車保險은 優良運轉者에 대해 料率을 20%

할인한다.

- 保險廳長은 주지사의 임명제로부터 선거제로 고친다.
 - 保險會社에 대한 反트러스트法 적용제의를 철폐한다.
- 保險業界는 提案 103이 회사 권리에 대한 부당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州最高裁判所에 제소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아 州保險廳에 의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③ ISO에 의한 勸告料率提示의 정지

미국에 있어서 損害保險 料率算出團體에는 全國

的 團體, 1개州만 포괄하는 團體, 여러 州를 포괄하는 團體등이 있는데 전국적인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ISO이다. 이 기구는 1971년 1월에 6개의 기관이 합병하여 설립된 것으로 모든 州에서 인가를 받고 있어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다. 保險統計의 수집, 保險料率의 算出, 勸告 혹은 標準約款의 作成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ISO가 1989년 4월 保險會社에 대한 勸告料率의 제공을 중단하고 豫定損害額(prospective loss costs)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保險料率의 결정이 價格協定에 유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競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각사에 料率算出을 위한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中小保險會社의 競爭上의 불리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단지 다른 料率算出團體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가능성도 있게 된다.

④ 反트러스트 訴訟

料率制度和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이번의 保險危機와 관련하여 1988년 3월, 9개州의 법무장관이 大規模保險會社, 再保險會社 및 ISO등을 상대로 聯邦 및 州의 反트러스트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몇몇 大規模保險會社가 共謀하여 再保險會社나 ISO등과 함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擔保範圍의 축소를 도모하여 이 때문에 州政府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후 새롭게 10個州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확산을 보이고 McCarran Ferguson법을 중심으로 하는 保險業의 聯邦 反트러스트法 적용대상에서의 제외 문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2) 料率規制의 再強化 움직임 : flex-rating制의 도입

保險危機對策의 하나로서 州에 따른 料率規制의 強化를 도모하고자 flex-rating制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競爭料率制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許容變動範圍(flex bands)를 申告基準料率에 대해 연간 일정율(各州, 各保險種目마다 다르다)로 정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事前認可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1986년 6월에 뉴욕州가 채택한 것을 시초로 캘리포니아州, 워싱턴州등이 이 制度를 채택하였으며, ISO에 의하면 86년 이후 競爭料率制로부터 flex-rating制나 事前認可制로 이행한 州는 1個州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에 시작한 自律化의 동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保險危機(insurance crisis)라는 이상사태하에서 保險料率暴騰抑制을 위한 긴급피난적인 대응책이며, 더구나 聯邦政府가 保險危機의 원인에 대해 不法行爲 制度의 불건전한 발달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規制強化의 움직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3) 各州에서의 現行 保險料率制度

미국의 損害保險料率制度는 이상과 같은 추이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各州의 現行料率制度는 표 Ⅲ-2와 같다.

3. 歐 洲

가. 西 獨

1) 現行料率制度

현재 대부분의 料率은 西獨 保險者協會(Gesamt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wirtschaft : GDV)의 會員團體인 責任·傷害·自動車保險協會 (Verband der Haftpflichtversicherer,

(表 Ⅲ-2)

美國의 州別料率規制制度

(1987年)

州	直接規制料率制度			開放的競争料率制度		
	州定料率制	算定機關料率制	事前認可制	申告後使用制	使用後申告制	申告不要制
알라바마 알라스카 아리조나			○ ○ ○醫師賠償		○(醫師賠償除外)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와싱톤 D C		○火災	○勤災 ○自動車·財產	○(勤災除外) ○ ○ ○左記以外		*○ *○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自動車 醫師賠償	○火災	○(自動車除外) ○勤災 ○ ○ ○火災除外 ○	○勤災 ○ ○自動車 ○勤災 ○ ○ ○ ○左記以外	○(勤災除外) ○ ○	*○勤災除外 *○勤災除外
미시간			○右記以外	○勤災·自動車 住宅總合		
미네소타			○勤災	○個人保險		企業保險 (勤災除外)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火災	○火災除外 ○勤災 ○ ○勤災 ○自動車 ○個人保險 ○勤災 ○醫師賠償 自家用自動車	○ ○ ○勤災除外 ○自動車除外 ○左記以外	*○勤災除外 ○企業保險 ○勤災除外	

州	直接規制料率制度			開放的競争料率制度		
	州定料率制	算定機關料率制	事前認可制	申告後使用制	使用後申告制	申告不要制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克拉호마 오레곤 펜실바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自動車		○自動車除外		
테네시			○ ○財産保險 ○(住宅綜合除外)	○災害保險 ○住宅綜合 *○		
텍사스	○火災· 自動車		○(自家用 自動車除外) ○個人保險 勤災 ○左記以外	○自家用 自動車	○企業保險 (勤災除外)	
유타 마몬트			○自動車保險 10%超過引上		○ ○	
버지니아			○勤災· 醫師賠償 ○個人保險 ○	○左記以外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企業保險		
와이오밍				○勤災·自家用 自動車	○左記以外	
와이오밍						○
합계	2	4	34	25	10	6

* 표는 flex-rating制

(出處: 「保險料率의 算定과 規制에 關한 諸問題」 越知 隆)

Unfallversicherer, Auto versicherer und Rechtsschutzversicherer : HUK)나 財産保險者協會(Verband der Sachversicherer : VdS)등에 의해 산출되고 회원사에게 勸告料率로 제시된다. 이 권고는

料率計算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구속력은 없고 각사의 판단으로 인상, 인하될 수 있고 또한 각사에서 결정한 料率은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신고로 충분하다.

또한 自動車保險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별도의 시행령으로서 이것을 정하고 있다. 즉 이 종목은 1962년까지는 統一料率制度를 취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自動車賠償責任保險料率에 관한 施行令」(Verordnung über die Tarife in die Kraftfahrzeug Haftpflichtversicherung : TVO)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우선 責任·傷害·自動車保險協會가 全會社의 損害統計를 수집하고 평균 클레임 코스트를 산출한다. 各社는 원칙적으로 이것에 기초하여 純保險料를 산출하고 附加保險料는 각사의 實績事業費에 기초하여 산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各社는 독자적인 料率表를 갖게 된다.

또한 당초 이 시행령은 自動車 車輛保險도 규제하는 것으로 그 명칭도 「自動車保險料率에 관한 施行令」(Verordnung über die Tarife in die Kraftfahrversicherung)이었는데 1984년에 自動車 車輛保險은 規制對象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聯邦 카르텔廳에 의한 獨禁法 適用除外規定의 濫用防止

서독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保險料率에 保險監督廳의 감독을 받는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競爭制限禁止法 제 102조에 의해 그 협정이나 권고는 同法の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편으로는 同條 제 4항에 의해 聯邦 카르텔廳의 엄격한 濫用規制를 받는다. 獨占禁止規定의 미적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지위의 남용에 연결된다고 판단된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責任·傷害·自動車保險協會(HUK)에 의한 普通傷害保險에 관한 料率勸告

HUK가 1978년에 신고한 권고에 기초하여 산출

된 普通傷害保險料率이 큰 이익을 유발했기 때문에 聯邦카르텔廳에 의해 남용적이라고 판단되어 HUK는 이 料率勸告를 취하게 되었다.

② 責任·傷害·自動車保險協會(HUK)에 의한 權利保護保險에 관한 料率勸告

HUK가 1984년에 신고한 權利保護保險에 관한 勸告料率은 클레임 코스트의 예측치가 지나치게 높은데다가 安全割増과 利益割増이 각각 5%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聯邦카르텔廳이 이익을 재기한 결과, 安全割増은 폐지되고 利益割増도 3%로 억제되었다.

③ 財産保險者協會(VdS)에 의한 住宅綜合保險에 관한 勸告料率

同協會의 勸告料率도 계산기초가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聯邦카르텔廳이 심사하여 계산을 다시하도록 했다.

나. 英國

영국의 保險監督은 公示自由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料率에 대한 申告, 認可 모두 요구되고 있지 않다. 料率算出에 관해 예전에는 火災保險에 대해 FOC(Fire Offices' Committee), 自動車保險에 대해서는 AOA(Accident Offices' Association), 特種保險에 대해서는 AOA나 EOA(Engineering Offices' Association)라는 團體가 料率을 산출하고 加盟會社間에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아웃 사이더도 존재했지만 協定會社의 시장지배력은 대단히 강력했다. 예를 들면 FOC는 1968년에 전국적인 協定料率團體로서 통합된 것이었는데 非加盟會社에 대한 受再를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65/35룰¹⁾이라 불리는 배타적인

1) 협정회사는 원칙적으로 비협정회사로부터의 재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비협정회사가 해당 리스크의 전액을 소화할 수 없는 협정회사에게 원수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협정회사는 65% 이상의 점유율로 협정요율을 인수하게 되어 있다.

시장관행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장을 지배해 갔다. 그러나 AOA에 의한 自動車保險의 料率協定은 非協定會社에 의한 심한 競爭의 결과, 1969년에 폐지되고 또한 火災保險의 料率協定은 FOC자체와 함께 英國獨占委員會 (Monopoly Commission) 권고에 기초하여 1985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英國保險者協會(ABI) 내에 財産保險委員會(Property Committee)가 料率을 산출하고 있는데 구속력은 없다.

다. EC競爭法の 保險事業에의 적용문제

EC내의 競爭制限등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규정은 EEC條約 (1957년) 제 85조부터 제 90조에 정해져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85조 및 86조이다. 제 85조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어떠한 종류의 協定, 決定 또는 共同行爲도 그것이 공동시장내의 競爭을 제한하고 가맹국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競爭法에 違反된다는 것이고, 제 86조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는 가맹국간의 거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競爭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EC競爭法이 保險事業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1984년 3월에 EC委員會가, 1987년 1월에는 EC裁判所가 이것을 인정했다.

이상, 각국의 損害保險料率制度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州가 競爭料率制로 이행하였고 事前認可制를 채택한 州도 特別料率制度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競爭原理가 적용되기 쉬운 制度로 되어 있었다. 또 서독이나 영국에서는 협회등이 산출하는 料率은 구속력이 없고 適用料率에 대해서도 인가취

득의무가 없는 등 規制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다. 이것에 비해 일본의 損保料率制度는 各保險種目마다 하나의 料率算出團體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 회원에게는 산출된 料率의 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등 타국에 비해 競爭原理가 적용되기 어려운 制度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規制料率制度와 競爭料率制度의 實證的 比較

前章에서는 일본 損害保險料率制度가 상대적으로 競爭制限의이라는 것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競爭促進的인 料率制度和 競爭制限的인 料率制度가 保險經營이나 保險市場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검토하고, 兩制度의 비교에 있어서 미국의 規制料率制度和 競爭料率制度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保險經營의 安定性, ②料率水準, ③availability문제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規制料率制度를 채택한 州와 競爭料率制度를 채택한 州의 동시기에서의 비교와 規制料率制度에서 競爭料率制度로 이행한 州의 시제열적 비교를 행하기로 한다.

1. 規制料率制 市場과 競爭料率制 市場과의 比較

1977년 1월에 미국 聯邦法務省이 발표한 보고서는 公的規制 및 聯邦 反트러스트法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損害保險(個人自動車保險)經營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 검토했다. 여기에는 競爭料率制度를 채택한 캘리포니아州와 事前認可制度를 채택한 뉴저지州 및 펜실바니아州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런 州들이 조사대상으로서 선택

(表 IV-1)

3個州의 損害率分析(1966년~1975년)

會社名	中位數					標準偏差				
	CA(%)	NJ(%)	PA(%)	NJ	PA	CA	NJ	PA	NJ	PA
				CA	CA				CA	CA
Allstate	72.17	85.23	80.71	1.18	1.12	5.68	9.62	6.67	1.69	1.17
State Farm*	64.63	69.69	71.74	1.08	1.11	5.04	12.52	8.19	2.48	1.63
Aetna*	67.50	72.50	69.40	1.07	1.03	3.19	11.66	10.03	3.66	3.14
INA	60.41	63.32	64.84	1.05	1.07	7.86	9.58	7.44	1.22	0.9
Ohio Casualty	55.62	64.81	58.22	1.17	1.05	7.40	8.66	2.74	1.17	0.37
West American	53.36	61.28	61.19	1.15	1.15	3.58	2.86	4.75	0.80	1.33
Travelers	62.96	72.48	66.09	1.15	1.05	7.49	9.76	6.94	1.30	0.93
USAA*	52.66	68.67	63.44	1.30	1.20	4.70	12.33	5.38	2.62	1.14
Hartford	67.67	73.85	65.60	1.09	0.97	4.69	12.43	6.46	2.65	1.38
Fireman's Fund	61.82	71.33	64.24	1.15	1.04	5.49	12.77	7.91	2.33	1.44
Assoc. Indemnity	57.12	61.54	66.52	1.08	1.16	7.02	8.65	13.79	1.23	1.96
11個社の 單純平均値	61.45	69.52	66.54	1.13	1.09	5.65	10.08	7.30	1.92	1.40
* 3個社の 單純平均値	61.60	70.29	68.19	1.15	1.11	4.31	12.17	7.87	2.92	1.97

出處: 「THE PRICING AND MARKETING OF INSURANCE」 U.S. DEPARTMENT OF JUSTICE 1977.1
 단, CA는 캘리포니아州, NJ는 뉴저지州, PA는 펜실바니아州의 損害率을 의미한다.

된 이유는 州料率規制法에 대해 그 구조와 이행이 일관 되며 과거 10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고 이 3個州를 합치면 1975년의 全美 個人自動車保險市場의 약 5분의 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당해보고서는 各州에서 영업하는 保險會社 11個社에 대한 경영의 안정성 비교를 통하여 競爭料率制度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 保險經營의 안전성 및 그 원인

1) 保險經營의 안정성

同報告書에서는 兩制度下에서 保險經營의 안전성을 비교하는 판단기준으로 損害率의 標準偏差가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保險會社의 데이터

에 의하면 競爭料率制度를 채택한 캘리포니아州의 損害率 標準偏差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同州에 있어서 損害率의 안정적 추이 그리고 경영면에서의 안정성이 추측되고 있다.

2) 안정화의 원인

이 보고서는 경영의 안정화를 초래한 원인을 料率彈力性의 유무에서 구하고 있다. 즉 競爭料率制度를 채택한 캘리포니아州의 料率은 彈力性이 크며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事前認可制度를 채택한 다른 2개주는 州當局이 인가를 통하여 料率決定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料率이 경직되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려지고 불충분하게 된다. 표 IV-2에 의하

(表 IV-2) 3個州의 價格變化分析(1966년~1975년)

會社名	平均價格變化 單位%			平均月數		
	CA	NJ	PA	CA	NJ	PA
Allstate	7.2(8)	12.2(7)	10.1(6)	13.0	19.2	21.8
State Farm	5.5(9)	9.6(4)	10.5(6)	11.9	25.7	23.0
Aetna	4.5(16)	5.3(10)	7.1(9)	7.4	12.9	12.3
INA	6.9(8)	12.7(4)	12.9(4)	15.4	33.7	35.7
Ohio Casualty	6.6(8)	9.2(6)	12.8(3)	15.6	23.2	40.5
Travelers	6.9(11)	13.4(5)	15.2(4)	11.1	26.8	37.0
USAA*	4.7(10)	11.7(6)	7.3(5)	10.8	21.6	20.8
Hartford	5.0(16)	6.2(5)	8.1(7)	7.2	15.8	14.2
Fireman's Fund	5.4(11)	5.8(10)	6.4(7)	7.4	12.6	13.8
單純平均値	5.9(10.8)	9.6(6.3)	10.0(5.7)	11.1	21.3	24.3

* ()內的 數字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價格變更 回數
 出處: 「THE PRICING AND MARKETING OF INSURANCE」 U.S. DEPARTMENT OF JUSTICE 1977.1

먼 캘리포니아州에서는 11.1개월에 한번의 비율로 料率變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저지州에서는 21.3개월에 1번, 펜실바니아州에서는 24.3개월에 1번의 비율로 밖에 料率變更이 이루어 지지 않아 競爭料率制度下에서는 신속적인 料率變更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나. 料率水準

競爭料率制度를 채택할 때의 우려중 하나로서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져 保險會社가 부당하게 높은 料率을 제시할 가능성을 들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州에서는 料率變化로 인상뿐만 아니라 料率引下도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3個州에서 조사 기간중 행해져 料率引下의 약 55%가 캘리포니아州에서 행해져 競爭料率制度下에서 保險料率이 현저하게 상승하리라는 불안을 부정하고 있다.

2. 規制料率制度에서 競爭料率制度로 이행한 시장에 대한 검토

다음에 規制料率制度에서 競爭料率制度로 이행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술한대로 이러한 예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에 미국에서 다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버지니아州의 경우를 검토한다. 同州는 1974년 1월에 事前認可制에서 競爭料率制度로 이행했는데 同州 Newman 保險廳長은 競爭料率制度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발표했다.

가. 經營安定化

Newman씨는 營業利益率을 이용하여 경영안정화를 검토했는데 버지니아州의 營業利益率은 12가지 경우(自家用自動車保險, 住宅綜合保險 각각에

(表 IV-3) 營業利益率分析

	全國平均	標準偏差	V州	③-①
	①	②	③	②
自家用車保險				
1974年	1.3	3.0	3.6	0.77
'75	-1.7	2.7	3.3	1.85
'76	0.9	2.9	6.3	1.86
'77	5.4	2.9	7.6	0.76
'78	3.8	2.2	4.0	0.09
'79	3.1	2.7	4.6	0.56
住宅綜合保險				
1974年	-1.9	6.5	7.7	1.48
'75	-0.5	4.9	2.4	0.59
'76	4.0	4.1	7.5	0.85
'77	6.9	4.3	4.9	-0.47
'78	6.2	4.1	5.3	-0.22
'79	2.6	6.5	6.0	0.52

(出處: 「Insurance Deregul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The Conference Board)

대해 6가지씩) 가운데 9가지 경우에는 標準偏差 범위내에 있었고 나머지의 3가지 경우는 標準偏差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것도 전국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競争料率制度로 이행하고 난 후 同州에서는 保險經營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나. availability 문제

미국에서는 availability문제의 존재 혹은 그 정도에 대하여 판단할 때 통상, 特定危險物件 (Assigned Risk Plan)의 규모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自動車保險의 불량리스크로서 保險會社가 인수를 거부한 계약을 강제적으로 各社에 할당하는 制度이며 따라서 이 州에 있어서 이 制度의 이용자의 수가 많은 경우, availability부족이 심각하고 保險制度가 충분히 그 기능을 완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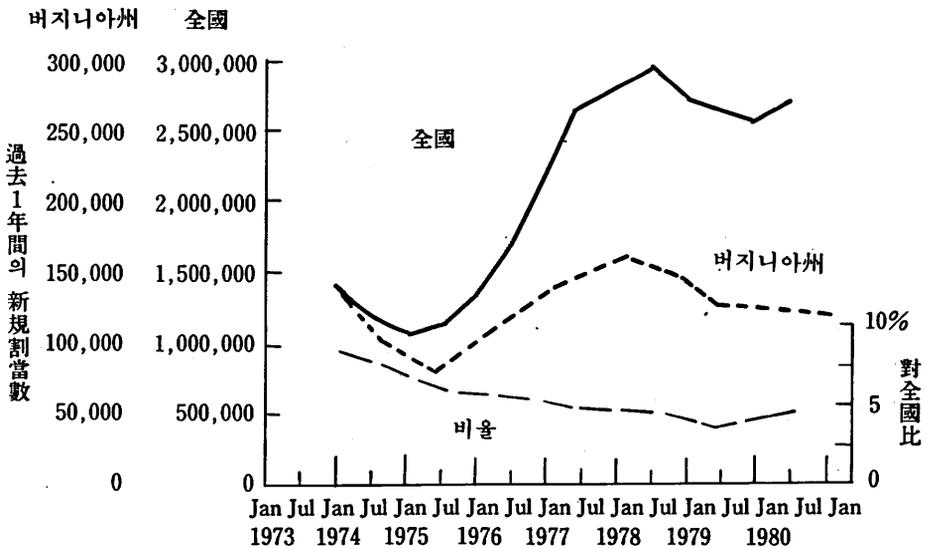
定危險物件의 규모를 전국과의 대비에서 관찰한 것이 그림 IV-1인데 1974년 이후 對全國比가 감소하고 있고 버지니아州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 料率水準의 추이

전술한 대로 料率의 결정에 관해 시장실세를 도입할 경우 우려중 하나는 高料率化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Newman씨는 이 점에 관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각종목 料率의 상승은 확실히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비율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상승은 없으며 料率水準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損害費用의 상승에 맞춘 정도의 인상에 그친다고 말할 수 있고 競争料率制度下에서의 料率暴騰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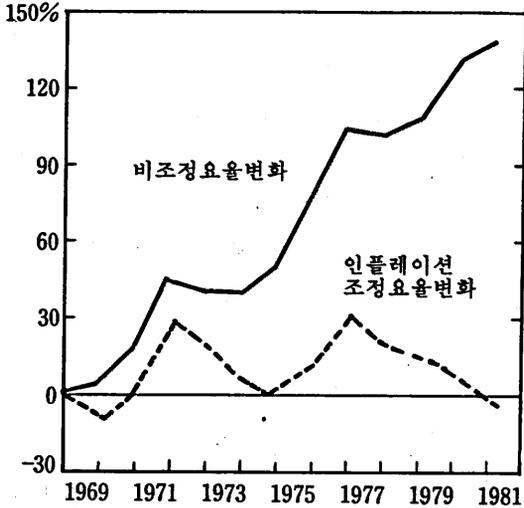
(그림 IV-1)

ARP의 新規割當數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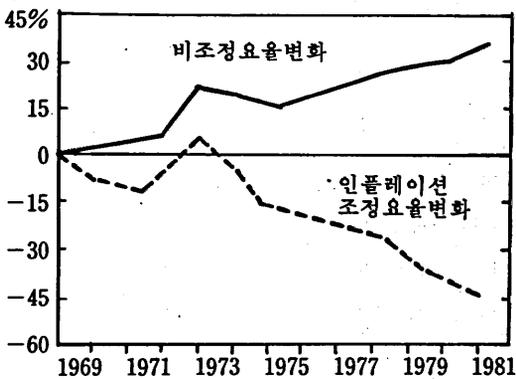
註) 1州는 技術的問題, 9州는 ARP制度가 없기 때문에 計算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出處: 「Insurance Deregul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The Conference Board)

〈그림 IV-2〉 自家用車保險料率의 推移
(버지니아州內平均)



註) 점선은 物價上昇率로 디스플레이한 實質水準을 나타낸다.
(出處: 「Insurance Deregul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The Conference Board)

〈그림 IV-3〉 住宅綜合保險料率의 推移
(버지니아州內平均)



註) 점선은 物價上昇率로 디스플레이한 實質水準을 나타낸다.
(出處: 「Insurance Deregul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The Conference Board)

이상, 規制料率制度和 競争料率制度와의 실증적인 비교검토를 행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競争原理導入의 有効성이 명확하다. 따라서 競争制限的인 일본의 損害保險 料率制度가 보다 競争促進的인 制度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競争原理의 도입은 規制에 의한 폐해의 제거가 목적이며 完全競争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V. 生命保險料率制度에 있어서 競争政策

이상과 같이 各國간의 制度比較 및 制度間的 실증적 비교에서 일본의 損害保險料率規制制度는 현재는 競争制限的이지만 금은 보다 競争促進的인 制度로 이행해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데 人접업제인 損保業界에 그러한 競争原理가 도입되면 당연히 生保業界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취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損害保險分野에 있어서의 검토를 실시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生保料率問題에 대해 검토를 덧붙이고자 한다.

1. 獨占禁止法과 生命保險事業

料率決定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生損保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쌍방모두 일정한 共同行爲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損保產業에 있어서는 料率算出에 관련된 共同行爲나 料率協定등이 법적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生保產業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獨禁法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 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生損保 兩業界의 獨禁法의 적용문제에 대한 연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損

保業界는 1947년 獨禁法을 제정할 때 保險業法 제 11조에 기초하는 強制料率體制가 위법이 되고 게다가 1951년에 東亞再保險會社 事件으로 재차 獨禁法 위반의 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獨禁法의 적용 제외를 확실한 것으로 하려는 입법조치가 취해진 것에 비해 生保業界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입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비해 미국, 서독등은 生損保를 불문하고 保險業에의 獨禁法 적용의 제외 또는 제한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일본 生保業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할 日美構造協議에서 獨禁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獨禁法 적용제외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生命保險料率制度에 競爭原理 도입

다음에 生保料率制度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料率制度의 國際比較

일본에서는 保險業法 및 同施行規則에서 豫定死亡率, 豫定事業比率, 豫定利率 및 保險料 計算法을 기재한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를 大藏大臣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대장대신의 인가권행사의 결과, 어느정도 料率體制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각국의 生保料率制度를 개관해 보면 영국에서는 保險料에 대해서는 인가의무도 제출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계산기초자료에 대해서도 자유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州의 직접적인 規制를 따르지 않고 뉴욕州의 경우

最低準備金 要件, 最高剩餘金 要件, 死亡表의 承認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規制를 받는데 그친다(NY州法 제 205조-제207조). 한편 서독은 生保料率에 대해서 인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保險料를 타사와 차별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며 死亡表나 豫定利率은 통일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獨占委員會로부터 自律化에 대한 제언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規制는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生保料率에 대해서도 일본의 料率制度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競爭料率制의 유효성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전술한 대로 大藏省의 감독하에 있는 民營生保各社는 料率이 어느정도 동일 수준이 되고 있지만 이 대장성의 감독에 따르지 않는 保險者가 존재한다. 簡易保險이나 共濟가 이것이다. 簡易保險은 당초 小額, 月納, 無診斷이기 때문에 民營保險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수

〈表 V-1〉 民營保險·簡易保險·農協共濟의 占有率推移 (單位: 億圓)

年度	民營保險	簡易保險	農協共濟
1965	244,173(80.8)	41,467(13.7)	16,399(5.4)
1970	782,301(81.9)	108,103(11.3)	64,849(6.8)
1975	2,654,100(81.9)	273,152(8.4)	314,487(9.7)
1980	5,723,283(80.9)	526,481(7.4)	827,145(11.7)
1985	8,713,314(79.2)	854,587(7.8)	1,436,278(13.1)
1970	58,548(60.7)	24,745(25.7)	13,115(13.6)
1975	128,960(56.6)	66,494(29.2)	32,333(14.2)
1980	262,578(54.8)	154,309(32.2)	62,475(13.0)
1985	538,705(57.3)	290,088(30.8)	112,147(11.9)

()內는 民保, 簡保, 農協共濟合計에 對한 占有率
(出處: 「인슈어런스 生命保險統計號」로부터 作成)

(表 V-2)

민營保險과 簡易保險의 保險料 推移
(養老保險, 男性 30歲, 保險金額 10만엔, 保險期間 15年)

(단위: 엔)

簡易保險		民營保險		
改正時期	保險料	改正時期	保險料	備考
1948. 1	590	1950.4	630	月納契約 取扱 開始 保險金額 50만엔 미만 : 539 1981.2까지 保險金額 50만엔 미만 : 534
1955. 9	565	1952.3	590	
1959. 4	545	1956.4	570	
1961. 4	540	1959.4	550	
1969. 9	525	1962.4	530	
1974.11	565	1969.6	524	
1979. 9	455	1974.5	522	
1984. 4	435	1976.3	475	
		1981.4	460	
		1985.4	437	

차례에 걸친 最高保險金額의 인상에 의해 현재는 민營保險과 競合關係에 있다. 또한 공제사업도 저렴한 保險料를 무기로 하여 역시 민營保險과 강하게 경합을 벌여 왔다. 이러한 簡易保險이나 공제의 料率水準은 대장성의 감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민營保險과는 상이하고, 더구나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민營保險과 경합관계에 서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兩者가 상호 견제하면서 料率競爭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엄격한 料率規制가 미치지 않는 아웃 사이더의 존재가 협조적인 料率制度에 일정한 競爭原理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도입된 競爭原理가 低料率을 촉진한 요인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것이 競爭原理導入의 유의성의 실증도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VI. 結 論

이런 점에서 保險審議會에서는 配當을 포함한 保險料率決定에 대해 競爭原理의 도입을 제안해 왔다. 또한 1989년 11월에 公正去來委員會가 발표한 보고서(「競爭政策의 관점에서의 政府規制의 수

정」)에서는 生命保險產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서술되어 있다. 保險料率은 大藏大臣의 인가를 통하여 어느정도 정립되어 있는데 계약자 배당에 대해서 최근 개별화가 추진되어 純保險料에 의한 競爭이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 계약자 배당도 規制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各社의 경영효율의 차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大藏大臣에 의한 사전인가 등의 規制를 폐지하는 등 競爭政策에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더우기 이 보고서를 정리한 연구회의 의장인 鶴田교수는 保險審議會 綜合部會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당을 포함한 生保保險料率制度에 競爭原理導入의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단 이 경우도 完全競爭이 되어 버리면 역으로 대규모 회사에 의한 독점상태의 출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점 등 보다 큰 폐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生保業界로서는 料率의 自律化를 향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各社의 경영능력 문제나 계약자의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